

4.5.12 장애학생지원센터규정

제정 2013. 08. 06.

개정 2021. 02. 25.

개정 2024. 02. 0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 직제규정 제38조(부속기관)에 의거 설치된 초당대학교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① “장애”라 함은 교수·학습활동 및 대학생활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는 신체 및 감각 기관의 기능 이상 또는 기능 저하를 말한다.
- ② “장애학생”이라 함은 관계기관에 장애인으로 등록(장애인 등록증 소지자)된 학생 또는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에서 장애인으로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초당대학교에 재학하는 장애학생에게 적용한다.

제4조(조직) 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장애인 인권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02.07.〉

- ② 센터장은 센터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한다.
- ③ 센터의 행정, 기술 및 진로·상담업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담직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학생을 위한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
2. 각종 학습보조기기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물적 지원
3. 도우미 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인적 지원에 대한 교육
4. 장애학생 교육복지지원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02.07.〉
5. 타부서와 연계하여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생활·복지·상담·진로·취업 등 비교과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4.02.07.〉
6. 취학편의 지원 및 정보접근 지원
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지원
8. 그 밖에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관련부서 및 임무) 장애학생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관련부서는 전부서로 하며,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관련부서가 관리하는 장애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2. 학습권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집행
3. 장애학생에 대한 관련 서비스 제도의 운영
4. 센터 업무수행에 대한 지원
5.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9조에 의거 장애학생의 교육 및 복지 지원의 기본 방침과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센터장이 추천하는 임명직 위원을 포함하여 총 위원수를 9명 이내로 하여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며, 간사는 장애학생지원센터 직원으로 한다.
- ④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장애학생의 교육에 관한 사항
 - 2. 장애학생의 복지에 관한 사항
 - 3. 장애학생의 시설 및 설비지원에 관한 사항
 - 4. 장애학생지원센터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5. 장애학생지원제도의 개선 및 지원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 6. 장애학생 인정에 관한 사항
 - 7. 기타 장애학생 학습지원에 관련된 제반 사항

제8조(심사청구) ① 장애학생 및 보호자는 학생의 장애로 인하여 학업 및 학생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별표 1>심사청구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02.07.>

- ②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심사결과는 <별표 2>심사결과통지서를 통해 2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02.07.>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한다.

부 칙

- 1.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0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02월 07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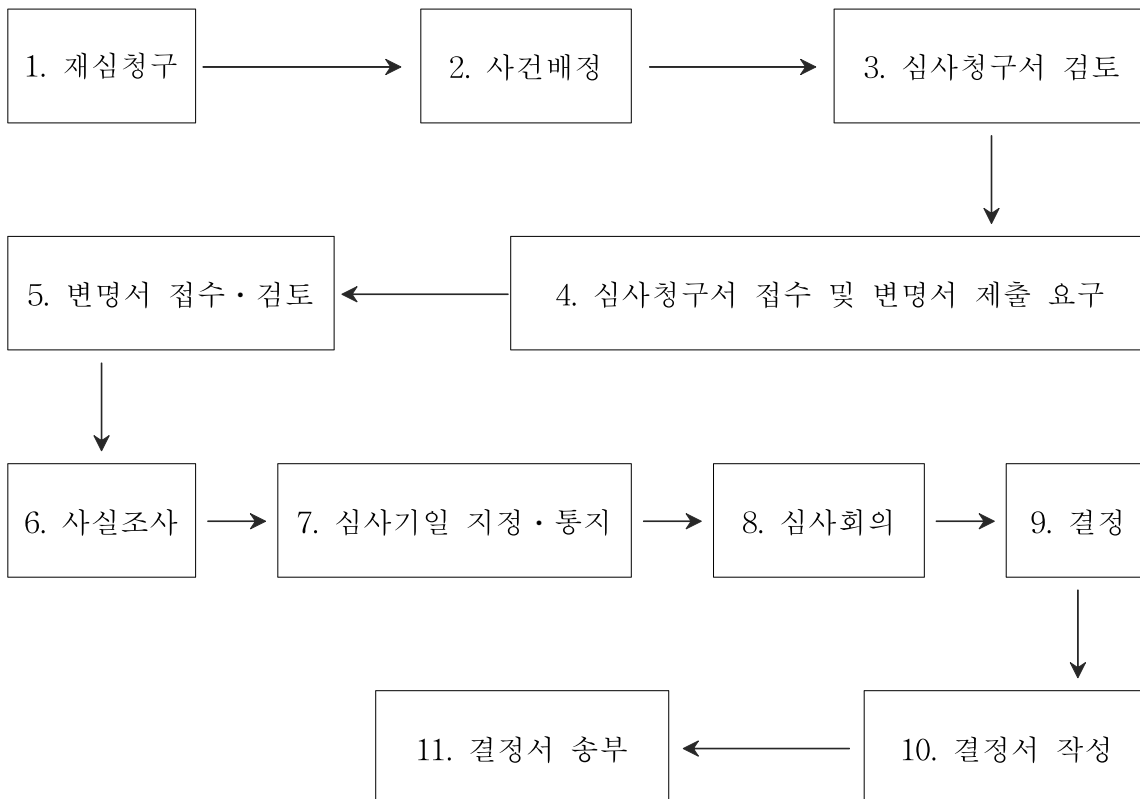
(앞 면)

심 사 청 구 서 (전 문 대 학 이 상)				
① 사 건				
② 청구인	성명		성별	
	주소	(전화번호:)		
	소속			
③ 피 청 구 인				
④ 재심청구의대상이 되 는 처 분 내 용				
⑤ 재심청구의취지				
⑥ 재심청구의이유				
⑦ 기 타 입 증 자 료				
⑧ 근 거 법 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위와 같이 심사를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특별지원위원회 위원장 귀하				

1. 심사청구서 작성요령

- ① 사 건 명: ○○ 처분 취소 청구
 - ② 피청구인: 처분권자를 말함
 - ③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내용: 년 월 일자
○○ 처분
 - ④ 심사청구의 취지: 피청구인이 년 월 일 청구인에 대하여 한 ○○ 처
분에 대하여 이의 취소를 구함
 - ⑤ 심사청구의 이유: 청구의 취지가 인용될 수 있도록 원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
다고 생각되는 점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하는 주장을 논
리적으로 기술
 - ⑥ 기타 입증자료: 본 건과 관련있는 각종 증거 및 참고자료
- ※ 심사청구이유 및 입증자료 내용이 많을 때는 목록만 기재하고 첨부자료로 제시 가능

2. 심사절차



〈별표 2〉 심사결과통지서 〈신설 2024.02.07.〉

[illegible]